

# 심 사 보 고 서

96. 3 . 30

1.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 (안)
2. 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 (안)

내 무 위 원 회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윤영길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는 호적법 시행규칙인 대법원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호적법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체계가 현행 4단계로 되어 있는 해태기간을 5단계로 개정하여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으로 부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주민등록에 대한 열람 및 등·초본을 읍·면·동에서만 발급해 오던것을 시본청 및 출장소 민원실에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는 주민등록업무의 완전 전산화에 따른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법령개정과 제도 개선사항으로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였으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사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